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6. 27.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년 5월 30일

나. 발 의 자: 이성수 의원 외 5명

다. 회부일자: 2025년 6월 9일

라. 상정일자: 제261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5. 6. 1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성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정원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구민참여를 유도하고, 마을정원사 육성 및 활용, 정원산업 육성 등을 규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원문화의 육성 및 발굴·진흥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마을정원사의 양성 및 인증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정원문화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정원박람회의 개최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류데레사)

□ 제정 배경 및 취지

○ 우리 구 현황

- 영등포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산이 없어 녹지 공간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이며, 과거 공업단지 및 노후 구도심 이미지의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녹지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따라 영등포구는 2024년 5월 8일 문래동 꽃밭정원 개장과 함께 '정원도시 영등포'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도시 이미지 전환을 위한 정원문화 확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 이러한 정책 기조에 따라 2025년 1월 1일자로 '미래도시국'을 신설하고, 그 하위 부서로 '정원도시과'를 설치하여 정원문화 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현재 적극 추진 중인 영등포구의 정원문화 조성 정책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정원도시 구현과 관련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2조(정의)제1호에서 "정원"의 정의는 상위법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정의를 준용하였으며,
 -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정의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서울시 정책 추진방향과 정합성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및 제4조(정원문화의 육성 등)는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정원문화 참여 정책 마련 ▲정원문화 활동 여건 조성 ▲민간 참여 활성화에 관한 구청장의 노력의무를 규정함.
- 안 제5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는 조례의 목적인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사업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방향성을 제시함.
- 안 제6조(주민 참여의 원칙) 및 안 제7조(정원문화의 확산 장려 및 지원 등)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정원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원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8조(마을정원사의 양성 및 인증) 및 안 제9조(마을정원사의 활용 등)는 안 제6조에 따른 구민참여 원칙의 구체화한 제도로, 단순히 마을정원사 교육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을 제고함.
- 안 제11조(정원문화센터의 설치·운영 등)는 현재 운영 중인 정원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안 제12조(정원박람회의 개최 및 평가)는 법 제18조의14(박람회 등 지원)에 따라 구청장은 정원 박람회 개최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바, 구청장이 직접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도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박람회의 발전을 위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평가를 외부평가를 원칙으로 하여 성과의 환류를 통해 박람회의 수준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검토 결과

- 영등포구는 ▲문래꽃밭공원 조성 ▲정원문화센터 3개소 조성 ▲마을정원사 양성 ▲정원축제(정원소풍) 개최 등 과거 구도심 이미지 탈피를 위하여 정원 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점 과제로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
-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정원문화 진흥 및 확산을 위하여 행정의 안전성과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현재 추진 중인 정원문화 정책에 지속성과 공공성을 부여하고, 제도적 근거를 통해 정책의 안정적 실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조례 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39
----------	-----

발의연월일: 2025. 5. .

발 의 자: 이성수, 유승용, 우경란
남완현, 차인영, 정선희
의원 (6인)

1. 제안이유

정원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구민참여를 유도하고, 마을정원사 육성 및 활용, 정원산업 육성 등을 규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원문화의 육성 및 발굴·진흥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나. 마을정원사의 양성 및 인증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다. 정원문화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라. 정원박람회의 개최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등포구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 문화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을 말한다.
3. “마을정원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정원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4.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정원사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문화의 육성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구청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6.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
8. 정원 캠페인의 추진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민 참여의 원칙) 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구민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자발적인 구민 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7조(정원문화의 확산 장려 및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구민 및 단체의 참여

와 협조를 통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원문화 교육
 2. 다양한 진흥사업을 통한 구민 참여 활성화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등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마을정원사의 양성 및 인증)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구민에게 마을정원사 인증서(수료증 등)을 수여한다.

③ 구청장은 마을정원사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양성, 인증 및 마을정원사의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마을정원사의 활용 등)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마을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민간 교육과정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정원 관련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교육 과정을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원 관련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

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정원문화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원문화 확산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원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원산업에 대한 자료 수집·보존 및 전시
2. 정원문화 관련 교육
3. 정원 관련 체험학습, 경연대회 및 박람회 개최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전문성·효율성을 위하여 정원 관련 사업·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단체에게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정원박람회의 개최 및 평가) ① 구청장은 구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 산업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박람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박람회 시책, 개최 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는 공정성·객관성을 위하여 외부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내부 평가(자체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제13조(표창) 구청장은 정원문화 진흥·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